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487호 2017. 1. 31(화)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354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3
- 사천시 조례 제1355호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5
- 사천시 조례 제1356호 사천시 사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사천시 조례 제1357호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8
- 사천시 조례 제1358호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13
- 사천시 조례 제1359호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 21
- 사천시 조례 제1360호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 26
- 사천시 조례 제1361호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27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635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31
- 사천시 규칙 제636호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43
- 사천시 규칙 제637호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 45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33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47
- 사천시 훈령 제331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74
- 사천시 훈령 제332호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 77

회
람

발행 : 사천시 / 편집 : 공보감사담당관 / ☎ 831-2216 / FAX 831-6012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879명” 을 “887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62명” 을 “870명” 으로 한다.

제4조의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

【별표 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u>887</u>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u>855</u>				-			
	3급	1	1						
	4급	<u>6</u>	3	1	<u>2</u>				
	5급	<u>48</u>	24	2	<u>5</u>	3	1	7	6
	6급 이하	<u>800</u>				-			
별정직 계		1				-			
	6급 상당	1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본문 외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용신청서

신청인	주 소			
	단 체 명		전 화 번 호	
	대 표 자		휴 대 전 화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대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소공연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실 <input type="checkbox"/> 연습실 <input type="checkbox"/>		
	부대시설	◇ ◇ ◇ ◇ ◇ ◇ ◇ 전시실 사용면적(304㎡) ◇ 파티션(장) ◇ 그림고리(개)		
사용 내용	사용시간	20 년 월 일() ~ 월 일() 오전□(: ~ :) 오후□(: ~ :) 야간□(: ~ :)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료구분	일 반 <input type="checkbox"/> 감 면(전 액 <input type="checkbox"/> 반 액 <input type="checkbox"/>		
	입 장 료	유 료 □(학생 원, 청소년 원, 일반 원) / 무료 □		
	공연시간	1회(: ~ :) 2회(: ~ :) 3회(: ~ :) 4회(: ~ :) 5회(: ~ :) 6회(: ~ :)		
	기타사항	사용시설 개방시간 : 무대설치 및 리허설 :		
<p>「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자 주 소 :</p> <p style="text-align: center;">성 명 : (서명 또는 날인)</p> <p>사 천 시 장 귀 하</p>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9)

3. “건축행위”란 영 제4조의3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증축행위를 말한다.
4. “납부의무자”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비용으로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6. “부담률”이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재원) 특별회계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용도) 특별회계는 영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 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물의 신·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0)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6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할 경우와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7조(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에 따른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제8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부담계획에 따른다.

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9조(용지환산계수 및 고시) ①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 시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별표에 따른다.

② 시장은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결정된 용지환산계수를 시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반시설 특별회계 징수관과 재무관, 수입금출납원 등을 둔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1)

1. 징수관·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과장
3. 수입금출납원 : 기반시설 설치비용 업무담당주사

제11조(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2)

[별표]

기반시설부담구역 용지환산계수의 산식(제9조 관련)

구 분	산 식	비고
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 공제용지환산계수	
기준용지환산계수	계획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공제용지환산계수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 / 계획된 건축연면적의 총합	

비고

1. “용지환산계수”란 기준용지환산계수에서 공제용지환산계수를 차감한 차이인 적용용지환산계수를 말한다.(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라 0.4 범위내에서 정한다)
2. “기준용지환산계수”란 이상적으로 설치되어야 할 기반시설의 최 대량(목표량)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 다.
3. “공제용지환산계수”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기반시설 용량 을 단위 건축물 연면적 기준으로 환산한 용지계수를 말한다.
4. “계획된 기반시설면적”과 “이미 설치된 기반시설면적”이란 영 제4조의2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3)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사천시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정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발굴 및 시행 등 지원을 위해 부서 간 정책협의를 하고자 시장 직할 소속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4)

제3조(도시재생의 기본방향) 도시재생은 기성 시가지의 활성화와 도시공간구조의 기능재편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기타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문고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주민의 참여) 사천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립 등) 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역 주민 스스로의 참여를 원칙으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5)

②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에게 지원금의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행정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서간 협업과 도시재생 추진과정의 정책협의를 위해 전담조직과 유관 부서기관 등과 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사천시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를 따른다.

제9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6)

③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11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사천시 출연기관 및 산하단체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제12조(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등) 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7)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③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법 제2조제1항제7호의 사업유형에 따라 시장이 직접 수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되며,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하되 협의회의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3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시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8)

제15조(용자의 조건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용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용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용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용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용자를 받는 자와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6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특별회계의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다.

제18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9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

제20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활용) ①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관리와 컨설팅을 위하여 다양한 전문가를 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 활용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19)

②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식과 프로젝트 관리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프로그램을 발굴 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총괄코디네이터 역할) 사업총괄코디네이터는 사업 전체를 기획·총괄·조정하며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관한 총괄·조정
- ② 국가정책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재생의 방향성을 제시
- ③ 사업의 성격에 따라 계획 및 설계용역 등의 발주방식 및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
- ④ 계획안의 수정·변경과 설계, 시공단계의 설계변경을 검토하고 결정
- ⑤ 행정기관, 주민협의체, 사업시행주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이를 계획 및 사업추진에 반영

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 \text{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text{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0)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천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1)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5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를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할 수 있다” 를 “위촉할 수 있다” 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관광교통과장” 을 “교통행정과장” 으로 한다.

제9조제3호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며,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3호 및 제4호” 를 “제4호” 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2)

가.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라. 가목, 나목,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용도의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건축물

제1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5호”를 “영 제15조제5항제16호”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3)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 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 = y_1 - (X - x_2)(y_1 - y_2) / (x_1 - x_2)$$

X : 해당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금액

Y : 해당 공사비 효율, y1 : 작은 금액 효율, y2 : 큰 금액 효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시장은 법 제25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3(실내건축 검사대상과 검사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하며, 이 경우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 대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가 일괄하여 검사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 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9조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영 제2조제12호의 부속건축물은 최소 0.5미터 이상을 띄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4)

제35조제2항 중 “영 제86조제2항” 을 “영 제86조제3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 을 “영 제86조제3항제2호” 로 하며, 같은 항 가목 중 “영 제86조제2항제2호” 를 “영 제86조제3항제2호” 로 한다.

제3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4(결합 건축) 법 제77조의14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따라 지정·고시된 택지개발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제4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0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과 제4항 단서 및 영 제1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 및 산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라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5)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한 경우(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와 이미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6)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사천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7)

조 례

사천시 조례 제136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28)

[별표 1]

관 랑 료(제9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 른
전 시 관	개 인	1,500	2,000	3,000
	단 체 (20명 이상)	1,000	1,500	2,500
특수영상관(4D)		1,000	1,500	2,000

* 어린이, 청소년, 군인, 어른의 구분은 제3조(정의)에서 규정

* 관람료 50퍼센트 감경 대상 : 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 주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단, 4D는 제외)

- 해당 지역 : 사천·진주시, 남해·하동군, 여수·순천·광양시, 고흥·보성군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1)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35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2)

[별 표]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u>887</u>	497	17	<u>122</u>	<u>44</u>	<u>25</u>	<u>104</u>	78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u>855</u>	494	17	<u>93</u>	<u>44</u>	<u>25</u>	<u>104</u>	78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u>6</u>	3	1	<u>2</u>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3	2	1						
	<u>행정+기술+농촌지도관</u>	<u>1</u>			<u>1</u>					
5급	소계	<u>48</u>	24	2	<u>5</u>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3)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 산+시설	2						2		
	행정+사회복지+공업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u>1</u>			<u>1</u>					
6급	소계	<u>227</u>	<u>139</u>	3	25	12	<u>6</u>	<u>29</u>	13	
	행정	48	41	2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3	2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4)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보건	1			1					
	시설	<u>13</u>	<u>13</u>							
	보건진료	6			6					
	행정+세무	10	7					1	2	
	행정+사회복지	14	<u>5</u>			2	<u>1</u>	4	2	
	행정+농업	8	1		1		2	4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3	1		2					
	행정+시설	21	18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4			4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u>10</u>	<u>10</u>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5)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해양수 산	2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3	3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u>2</u>	1					<u>1</u>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 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 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 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 경	1	1							
	행정+공업+시설+방 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농업+해양수 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 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6)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u>행정+보건+식품위생</u>	1	1							
	운전+방호+위생	2	2							
7급	소계	<u>254</u>	<u>158</u>	3	31	12	5	27	18	
	행정	55	41	2			1	8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3	2		1					
	농업	1			1					
	녹지	2	2							
	해양수산	3	3							
	보건	7	2		5					
	의료기술	3			3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u>15</u>	<u>13</u>			1	1			
	수의	1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7	5				1	1		
	행정+사회복지	13	9			2			2	
	행정+전산	5	4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7)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농업	5	1		1		1	2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4	21			1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1			1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공업+농업	5	5							
	행정+공업+환경	8	6			2				
	행정+공업+시설	8	7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2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3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6	1				1		4	
	행정+농업+시설	4	4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공업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8)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공업+시설+보건	1	1							
	<u>보건+식품위생</u>	1	1							
	방호	1						1		
	운전	4	2		1	1				
	사무운영	3				1		1	1	
8급	소계	<u>209</u>	110	4	<u>23</u>	<u>11</u>	10	25	26	
	행정	57	24	2		1	6	11	13	
	세무	3	2					1		
	사회복지	10	3				2	2	3	
	공업	3	2			1				
	<u>농업</u>	<u>1</u>			<u>1</u>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4	1		3					
	의료기술	3			3					
	간호	3			3					
	보건진료	4			4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39)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환경	3	2			1				
	시설	14	13			1				
	행정+세무	8	5						3	
	행정+사회복지	<u>12</u>	9			<u>2</u>	1			
	행정+전산	3	3							
	행정+농업	5	2		1				2	
	행정+보건	1	1							
	보건+간호	2			2					
	행정+시설	18	14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공업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0)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1							1	
	행정+녹지+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2	2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운전	5	2		1	2				
	시설관리	1	1							
	통신운영	1	1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u>110</u>	59	4	7	6	<u>3</u>	<u>16</u>	15	
	행정	14	9					4	1	
	사회복지	<u>15</u>	<u>5</u>				<u>1</u>	<u>1</u>	<u>8</u>	
	농업	1			1					
	녹지	1	1							
	시설	7	5					2		
	세무	1	1							
	보건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u>6</u>	3					<u>2</u>	<u>1</u>	
	행정+농업	2			1				1	
	행정+녹지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1)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	<u>8</u>	<u>8</u>							
	행정+공업	2	1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u>행정+세무+사회복지</u>	<u>2</u>							<u>2</u>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 술	1			1					
	<u>행정+사회복지+농 업+시설</u>	<u>3</u>					<u>1</u>	<u>2</u>		
	행정+사회복지+환 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 설	1						1		
	행정+환경+시설+보 건	1				1				
	기계운영	1	1							
	속기	2		2						
	운전	10	5	2	2	1				
	사무운영	10	6			1	1	1	1	
	전기운영	1	1							
	방호	4	1			1		2		
	위생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2)

직렬별	기관별	총합 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 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 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1	1							
별정6 급상당	비서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3)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36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제3호 중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오지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지역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2.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추진
3.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4. 도서개발 및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사항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4)

제10조제3항 중 “제12조” 를 “제14조” 로 한다.

제11조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을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 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를 “지방행정주사·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해양수산주사” 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5)

규 칙

사천시 규칙 제637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6)

[별표 2] 본청 전결대상사무

소 관 부서별	단위업무	세 부 사 무 명	담당자		담과 당 관장	사 업 소 장	국·소 장	부시장	시 장
			실무자	주사급					
녹 지 공 원 과	13.조림사업	1.조림사업계획 수립	기안		○				
		2.조림사업 시행	기안		○				
		3.조림사업 묘목생산 수급	기안		○				
		4.조림예정지 정리사업	기안		○				
		5.종묘생산업 등록, 종묘생산업자 관리 및 지도	기안		○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7)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30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부서별로 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은 별표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8)

【별 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총 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887	855	1	6	48	227	254	209	110	1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8	18			1	6	9	2					
공보감사담당관	23	23			1	7	9	6					
행정과	29	26	1	1	1	7	6	4	6	1	1		1
주민생활지원과	28	28			1	5	9	8	5				
사회복지과	25	25			1	6	7	6	5				
문화관광과	22	22			1	6	7	4	4				
정보통신과	14	14			1	5	3	4	1				
체육지원과	15	15			1	6	6	1	1				
환경위생과	23	23			1	7	8	6	1				
민원지적과	23	23			1	8	8	5	1				
세무과	29	29			1	8	10	7	3				
회계과	22	22			1	6	6	7	2				
재난안전과	20	20		1	1	5	5	3	5				
해양수산과	22	22			1	6	6	7	2				
교통행정과	21	21			1	5	6	6	3				
도시과	15	15			1	4	5	4	1				
건축과	25	25			1	6	8	7	3				
건설수도과	22	22			1	7	5	5	4				
도로과	21	21			1	5	8	3	4				
녹지공원과	18	18			1	6	5	3	3				
지역개발과	13	13			1	4	3	4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49)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우 주 향 공 과	15	15		1	1	4	4	3	2				
산 업 단 지 과	15	15			1	4	6	2	2				
투 자 유 치 과	17	17			1	5	8	3					
의 회 사 무 국	17	17		1	2	3	3	4	4				
보 건 소	70	70		1	2	18	24	21	4				
농업기술센터	52	23		1	3	7	7	2	3			29	
평생학습센터	12	12			1	4	4	3					
환 경 사 업 소	15	15			1	4	4	3	3				
하수도사업소	17	17			1	4	4	5	3				
신 수 출 장 소	2	2				1	1						
사 천 읍	25	25			1	6	5	10	3				
정 동 면	15	15			1	4	4	2	4				
사 남 면	16	16			1	4	6	4	1				
용 현 면	15	15			1	4	3	5	2				
축 동 면	13	13			1	4	3	4	1				
곤 양 면	17	17			1	5	3	5	3				
곤 명 면	14	14			1	4	4	3	2				
서 포 면	14	14			1	4	4	2	3				
동 서 동	13	13			1	2	2	5	3				
선 구 동	12	12			1	2	3	3	3				
동 서 금 동	11	11			1	2	2	3	3				
별 용 동	18	18			1	3	6	6	2				
향 촌 동	12	12			1	2	3	5	1				
남 양 동	12	12			1	2	2	4	3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0)

기획예산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6	9	2		
일반직	소 계	18		1	6	9	2			
	행 정	11		1	5	4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농업+녹지	1				1				

공보감사담당관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23</u>		1	<u>7</u>	<u>9</u>	<u>6</u>		
일반직	소 계	<u>23</u>		1	<u>7</u>	<u>9</u>	<u>6</u>			
	행 정	<u>9</u>		1	3	<u>3</u>	<u>2</u>			
	시 설	<u>2</u>				1	<u>1</u>			
	행정+시설	<u>4</u>			<u>2</u>	1	1			
	행정+전산+공업	3			1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4			1	2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1)

행정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29	1	1	1	8	6	4	6	1
일반직	소 계	26	1	1	1	7	6	4	6		
	부이사관	1	1								
	행 정	17		1	1	6	5	2	2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기계운영	1							1		
	운 전	2						1	1		
	운전+방호+위생	1				1					
사무운영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직	소 계	1				1					
	비서요원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주민생활지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28</u>		1	<u>5</u>	9	8	<u>5</u>	
일반직	소 계	<u>28</u>		1	<u>5</u>	9	8	<u>5</u>		
	행 정	5			1	3	1			
	사회복지	<u>7</u>			1	2	1	<u>3</u>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u>15</u>		1	<u>3</u>	4	6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2)

사회복지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25</u>		1	<u>6</u>	7	6	5	
일반직	소 계	<u>25</u>		1	<u>6</u>	7	6	5		
	행 정	8			3	4		1		
	사회복지	3					1	2		
	행정+사회복지	11		1	2	3	3	2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u>2</u>			<u>1</u>		1			

문화관광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7	4	4	
일반직	소 계	22		1	6	7	4	4		
	행 정	4			1	2		1		
	공 업	2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보건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9			5	2	1	1		
	사무운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3)

정보통신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5	3	4	1		
일반직	소 계		14		1	5	3	4	1		
	행정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0			4	3	2	1		

체육지원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6	6	1	1		
일반직	소 계		15		1	6	6	1	1		
	행정		6			3	3				
	시설		1				1				
	공업		2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운전+방호+위생		1			1					
	위 생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4)

환경위생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3		1	7	8	6	1			
일 반 직	소 계	23		1	7	8	6	1			
	행 정	3			1	1		1			
	환 경	4			1	2	1				
	공 업	1					1				
	보 건	3				2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보건	1			1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보건+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4			1	1	2				
	<u>행정+보건+식품위생</u>	<u>1</u>			<u>1</u>						
<u>보건+식품위생</u>	<u>1</u>				<u>1</u>						

민원지적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3		1	8	8	5	1			
일 반 직	소 계	23		1	8	8	5	1			
	행 정	<u>8</u>			2	3	<u>3</u>				
	시 설	<u>6</u>			2	2	<u>1</u>	1			
	행정+시설	5		1	2	2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전산+시설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5)

세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29</u>		1	<u>8</u>	10	<u>7</u>	3	
일반직	소 계	<u>29</u>		1	<u>8</u>	10	<u>7</u>	3		
	행 정	<u>5</u>		1	2	1	<u>1</u>			
	세 무	9			1	5	2	1		
	행정+세무	<u>14</u>			<u>5</u>	4	4	1		
	사무운영	1						1		

회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u>6</u>	6	<u>7</u>	2	
일반직	소 계	22		1	<u>6</u>	6	<u>7</u>	2		
	행 정	<u>8</u>		1	2	1	<u>4</u>			
	행정+세무	<u>3</u>			<u>1</u>	1	1			
	행정+공업	3			1	1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2				2				
	운 전	3				1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6)

재난안전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0	1	1	5	5	3	5		
일 반 직	소 계		20	1	1	5	5	3	5		
	행 정		3			1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7			2	3	1	1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방 송통신		1			1					
	운전		1						1		
통신운영		1					1				

해양수산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6	7	2		
일 반 직	소 계		22		1	6	6	7	2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6		1		1	3	1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해양수산+환경+시설		3				2	1			
사무운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7)

교통행정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1		1	5	6	6	3			
일 반 직	소 계	21		1	5	6	6	3			
	행정	6			2	1	2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8		1	2	3	1	1			
	운전	2				1		1			
	전기운영	2						2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4	5	4	1			
일 반 직	소 계	15		1	4	5	4	1			
	행정	3			1	1	1				
	시설	5			2	1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5		1	1	1	2				
	행정+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8)

건축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5		1	6	8	7	3	
일 반 직	소 계	25		1	6	8	7	3		
	행 정	4			1	1	1	1		
	사 회 복 지	1					1			
	시 설	11			2	4	4	1		
	행 정 + 시 설	5		1	2	2				
	행 정 + 농 업 + 시 설	3			1	1		1		
	시 설 관 리	1					1			

건설수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7	5	5	4	
일 반 직	소 계	22		1	7	5	5	4		
	행 정	4			2	1	1			
	시 설	5			2		2	1		
	환 경	1					1			
	공 업	1			1					
	행 정 + 시 설	2		1	1					
	행 정 + 공 업 + 농 업	1				1				
	행 정 + 농 업 + 시 설	3			1	1	1			
	행 정 + 해 양 수 산 + 시 설	1				1				
	행 정 + 공 업 + 보 건 + 시 설	1				1				
	사 무 운 영	2						2		
	전 기 운 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59)

도로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8	3	4	
일 반 직	소 계	21		1	5	8	3	4		
	행 정	1				1				
	시 설	7		1	2	1	2	1		
	행정+시설	4			1	2		1		
	행정+농업	2			1		1			
	행정+공업	2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1				1				
	방 호	1							1	
	운 전	1							1	

녹지공원과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8		1	6	5	3	3	
일 반 직	소 계	18		1	6	5	3	3		
	행 정	3				1	1	1		
	녹 지	5			1	2	1	1		
	행정+녹지	5			2	2		1		
	행정+농업+녹지	5		1	3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0)

지역개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13</u>		1	4	3	4	<u>1</u>		
일 반 직	소 계		<u>13</u>		1	4	3	4	<u>1</u>		
	행 정		3			1	1	1			
	시 설		<u>4</u>			<u>2</u>	1	1			
	행정+시설		5		1	<u>1</u>	1	1	<u>1</u>		
	행정+농업+녹지		1					1			

우주항공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1	4	4	3	2		
일 반 직	소 계		15	1	1	4	4	3	2		
	행 정		<u>3</u>			1		1	1		
	시 설		<u>1</u>				<u>1</u>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9		1	3	2	2	1		
	행정+공업+환경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1)

산업단지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6	2	2	
일반직	소 계	15		1	4	6	2	2		
	행정	2			1	1				
	시설	3			1	1	1			
	행정+시설	8		1	1	3	1	2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투자유치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8	3		
일반직	소 계	17		1	5	8	3			
	행정	2			1	1				
	세무	1			1					
	행정+시설	7		1	1	2	3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2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2)

의회사무국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2	3	3	4	4			
일반직	소 계	17	1	2	3	3	4	4			
	행정	7		1	2	2	2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속 기	2						2			
	운 전	2						2			

보건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70	1	2	18	24	21	4			
일반직	소 계	70	1	2	18	24	21	4			
	기술	1	1								
	보건	10			1	5	3	1			
	의료기술	6				3	3				
	간 호	7				4	3				
	보건진료	12			6	2	4				
	행정+보건	4			2	1		1			
	보건+간호	7			4	1	2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5			4	6	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1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3		2	1						
	운 전	3					1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3)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52</u>	<u>1</u>	<u>3</u>	7	7	<u>2</u>	3	
일반직	소 계	<u>23</u>	<u>1</u>	<u>3</u>	7	7	<u>2</u>	3		
	농 업	<u>6</u>			3	1	<u>1</u>	1		
	공 업	1				1				
	수 의	1				1				
	행정+농업	4			1	1	1	1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u>1</u>		<u>1</u>						
	<u>행정+기술+농촌지도관</u>	<u>1</u>	<u>1</u>							
	운 전	1						1		
지도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4)

평생학습센터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12</u>		1	4	4	<u>3</u>		
일반직	소 계	<u>12</u>		1	4	4	<u>3</u>			
	행 정	3		1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u>6</u>			2	2	<u>2</u>			
	운 전	1					1			
	사무운영	1				1				

환경사업소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4	3	3	
일반직	소 계	15		1	4	4	3	3		
	공 업	1			1					
	행정+환경	3			1	1		1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환경	3			1	2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2		1				1		
	운 전	3				1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5)

하수도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5	3			
일 반 직	소 계	17		1	4	4	5	3			
	행 정	1					1				
	환 경	1					1				
	시 설	2				1	1				
	공 업	1					1				
	행정+시설	2			1	1					
	공업+환경	2			1			1			
	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방 호	1						1			
	사무운영	1						1			

신수출장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			1	1					
일 반 직	소 계	2			1	1					
	행 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6)

사천읍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u>25</u>		1	<u>6</u>	5	10	<u>3</u>		
일반직	소 계	<u>25</u>		1	<u>6</u>	5	10	<u>3</u>			
	행정	7				1	6				
	사회복지	<u>3</u>					2	<u>1</u>			
	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u>2</u>			<u>1</u>		1				
	행정+농업	3			2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u>2</u>		1					<u>1</u>		
	사무운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7)

정동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4	4	2	4			
일 반 직	소 계	15		1	4	4	2	4			
	행 정	3				2		1			
	사회복지	<u>2</u>				2					
	시 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u>2</u>			1				<u>1</u>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방 호	1							1		

사남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4	1			
일 반 직	소 계	16		1	4	6	4	1			
	행 정	5				1	3	1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8)

용현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4	3	5	2			
일 반 직	소 계	15		1	4	3	5	2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3		1	4	3	4	1			
일 반 직	소 계	13		1	4	3	4	1			
	행 정	3					2	1			
	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사무운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69)

곤양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3	5	3	
일 반 직	소 계	17		1	5	3	5	3		
	행 정	5				2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수의+환경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2		1	1					

곤명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3	2	
일 반 직	소 계	14		1	4	4	3	2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방 호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0)

서포면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4	4	2	3	
일 반 직	소 계	14		1	4	4	2	3		
	행 정	1				1				
	세 무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방 호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1)

동서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2	5	3	
일 반 직	소 계	13		1	2	2	5	3		
	행 정	5					5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공업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보건	1			1					

선구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2		1	2	3	3	3	
일 반 직	소 계	12		1	2	3	3	3		
	행 정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u>2</u>				1		<u>1</u>		
	행정+세무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u>2</u>				1		<u>1</u>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2)

동서금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1		1	2	2	3	3			
일반직	소 계	11		1	2	2	3	3			
	행정	4			1		2	1			
	사회복지	<u>2</u>				1		<u>1</u>			
	행정+세무+사회복지	<u>3</u>			1	1		<u>1</u>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2		1				1			

별용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8		1	3	6	6	2			
일반직	소 계	18		1	3	6	6	2			
	행정	4				2	2				
	사회복지	<u>4</u>				1	2	<u>1</u>			
	행정+사회복지	<u>3</u>			2			<u>1</u>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3)

향촌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2		1	2	3	5	1	
일 반 직	소 계	12		1	2	3	5	1		
	행 정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사무운영	1				1					

남양동

직급별 직렬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2		1	2	2	4	3	
일 반 직	소 계	12		1	2	2	4	3		
	행 정	4			1	1	2			
	사회복지	2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4)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31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별표 1의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5)

[별표 1] 본청 과의 세부 분장사무(제3조 관련)

[행정국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세무과	세입관리 담당	1. 세입금 총괄 관리
		2. 국도비 보조금 등 입출금 관리
		3. 세외수입 과정 총괄 관리
		4. 세외수입 과오납 환부
		5. 세외수입 징수상황 정기 및 수시 보고
		6. 자금수급 계획수립 및 배정
		7. 세외수입 전산관리
		8. 수입증지 관리(도·시 증지)
		9. 자금 운용
		10. 세입 예산 및 결산
		11. 시금고 및 대행점(수납·지출) 계약 및 관리
		12. 기부금품 모집 접수 및 관리
		13. 채권업무 총괄
		14. 세외수입관련 조례 제개정
		15.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관리 및 징수에 관한 사항
		16.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재산관리 및 현지 실태조사
		17.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금융자산 및 기타채권압류
		18.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및 부동산, 차량 압류
		19. 경매·공매, 교부청구,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20.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 대금지급 정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21. 체납·결손자료 신용정보회사 제공(신용불량자 등록)
		22.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징수계획 수립
		23.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24. 관허사업 제한
		25. 대금지급 정지
		26. 원클릭시스템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6)

[산업건설국 소관]

부 서 명	사무분야	분 장 사 무
녹 지 공 원 과	산림방제 담 당	1. 산림 병해충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2.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계획 수립 및 시행
		3. 소나무류 이동·단속 시스템 구축 등 주민홍보
		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예찰·실행 및 사후관리
		5. 산림병해충 나무주사 계획수립 및 실행
		6. 항공방제 및 예찰(소나무재선충병, 밤나무해충, 돌발해충)
		7. 산림병해충 약제 및 기자재수급 관리
		8. 수종갱신에 따른 조림 및 사후관리
		9. 어린나무가꾸기 및 덩굴류 제거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0. 통합 숲 가꾸기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11. 해안 방제림 조성 관리
		12. 솔껍질 깎지벌레 방제
		13. 산림병해충 예찰 방제단 운영
		14. 종묘생산업 등록 및 관리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7)

훈 령

사천시 훈령 제332호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7년 1월 31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상황관리”란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한 상황전파와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8)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3조(구성) ① 사천시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상황실” 이라 한다)은 재난 안전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 이라 한다)과 상황실 전담인력 3명으로 구성한다.

② 상황실장은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4조(임무)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②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난발생과 응급조치 및 수습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관리
2. 기상특보·재난 등 파악된 상황전파와 유지 및 신속한 초동대응
3. 재난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
4.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과 관련하여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5. 중앙·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중앙·지역 사고수습본부와의 긴밀한 협조·지원
6. 주요재난 발생시 관계부서 직원의 비상소집 등 필요한 조치
7. 그 밖의 재난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3장 상황실 운영

제5조(상황실 운영 등) ① 상황실은 연중무휴 상시 운영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24간씩 1인 3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제4조의 임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상황실 근무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7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황실장은 시장의 지휘를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시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2. 연말연시의 비상근무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3.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상황실의 추가인력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효율적인 상황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근무시간 및 복무) ① 상황근무자의 근무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로 한다.

② 상황근무자는 업무개시 30분 전에 출근하여 전 근무자와 함께 합동 근무를 실시하면서 재난관리 상황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 상황근무자는 별표 1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상황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근무신고) 상황근무자는 근무시작 이후 지체 없이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여 시·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보고 및 전파

제8조(보고 및 전파 등) ① 상황근무자는 주요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0)

②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그 관할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황실장 및 상황근무자는 시장, 부시장, 담당국장 등 보고체계에 따라 지체 없이 보고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 등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화나 팩스(FAX)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보고의 종류 및 작성방법 등) 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 상황 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보고 : 매일 1회 보고하는 “일일 상황” 보고
2. 수시보고 : 주요 재난상황에 대하여 최초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로 구분하여 실시간 수시보고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작성하는 정기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일 1회 작성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작성하는 수시보고서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작성시기와 서식 및 내용은 상황실장이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기록유지 및 협조

제10조(기록유지) ① 상황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황일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1)

- ② 상황근무자는 재난상황과 관련된 각종 문서·대장 등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상황실장은 상황조치 요령, 비상연락망, 유관기관·단체 연락처, 상황실 근무수칙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정비·관리하여야 한다.
- ④ 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 업무매뉴얼을 작성하여 상황근무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재난관리책임기관 등과의 협조)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장비관리 및 점검

제12조(장비관리) ① 상황실장은 효율적인 상황관리를 위하여 각종 전산 및 통신장비 등이 관련 기준을 만족하고, 항상 최신시설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시스템과 장비에 대한 관리카드 및 관련대장을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장비점검) ① 상황실장은 상황실 운영을 위한 시스템 및 영상회의 등 연계장비와 통신회선에 대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상이 발생한 때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2)

제7장 인사 및 후생복지 등

제14조(결원보충) 상황실 근무인력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상황실 업무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충원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수당 및 상황관련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훈련)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하여 상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체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근무환경 조성) 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가 상시 근무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근무환경을 항상 쾌적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3)

[별표 1]

상황근무자 근무수칙

- 상황실 근무자는 이 수칙을 정확히 알고 지켜야 한다 -

1. 지휘계통과 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근무한다.
2. 준수사항
 - 지정 근무시간 30분전에 도착, 상황 인수·인계
 - 당일 상황근무자는 30분전에 상황실에 도착, 실장에게 근무신고 후 **전(前)근무자로부터** 상황을 인수받아 근무
 - 근무시작 즉시 NDMS에 등록하여 시도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신고
 - 전(前)근무자는 보고체계에 의한 보고 및 다음 근무자에게 모든 상황을 인계하고 실장에게 신고 후 퇴청
3. 보고서 작성기준
 - 평시 : “재난관리 일일상황” 보고서(06시 기준) 작성
 - 수시 : 재난 상황 진전에 따라 수시 보고서 작성(최초 - 중간 - 최종)
4. 상황보고 및 전파
 - 시장, 부시장 및 담당국장에게는 상황실장 또는 상황근무자가 직접 보고
 - 유관기관 및 단체에 상황전파시스템, 유선, FAX 등을 활용하여 전파
 - 주요재난 발생 등 긴급사안인 경우 보고체계에 따라 즉시 보고
5. 상황실 장비 등을 수시 점검·확인하고, 교대시에는 상황 및 각종 비품의 인계·인수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
6.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7. 상황실장의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8. 근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유지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9. 상황실은 상황근무자 및 재난안전관련 업무 관계자를 제외한 인원 외 접근 또는 출입을 제한한다. 단 통제구역은 비인가자의 출입을 금한다.
10. 재난상황 발생 시 상황실장 보고 후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4)

[별지 제1호서식]



사천시 재난안전 일일 상황

- 20 . 00. 00() 06:00 현재 -

재난안전
상황실
(000) 000-0000

기상개황

주요재난 안전 관리상황

○



재난안전 예방 활동 및 훈련

○



언론보도 주요사항 등

○



210mm×297mm[백상지 80g/㎡]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5)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즉시 보고 제 호

수신:

시행일시:

접수일시:

발신: 기관명 및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제목:

1. 일시:

2. 장소:

3. 상황 개요(사고 원인)

4.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명(사망: , 실종: , 부상:)

※ 별첨: 사망자·실종자 인적 사항

나. 재산피해

다. 그 밖의 피해

5. 응급조치 사항

가. 조치사항

나. 동원사항

- 인력: 명(민간인: , 군인: , 경찰관: , 소방공무원: , 공무원:)

- 장비: 대()

6. 지원 및 협조사항

7. 향후 전망 및 대책

작성 방법

1. 사망자·실종자 인적사항은 붙임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⑤란부터 ⑦란까지는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사 천 시 공 보

제487호(86)

[별지 제3호서식]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일지

'17. 00. 00(0) 00:00~00.00(0) 00:00

인계자	성명 :
인수자	성명 :
지시 사항	○ ○
주요상황 (조치)	○

○ 중요사항 상황관리

일 시	내 용
00.00(0) 00:00	<주요사고 관련>
00.00(0) 00:00	<화재 발생 관련>
00.00(0) 00:00	< AI, 구제역 관련>
00.00(0) 00:00	<교통사고 관련>
00.00(0) 00:00	<기 타>

210mm×297mm[백상지 80g/㎡]